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4394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하성진(기소), 조현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남희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0. 23. 선고 2024고단2657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고소인이 IP 주소 등을 피고인의 실질적인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그 자료에 기초한 수사절차도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척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유죄의 이유'란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고소인이 IP 주소 등을 수집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신비밀보호법에 사인이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를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IP 주소(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등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주소), MAC 주소(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물리적 고유 식별 주소)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등의 기계에 관한 정보이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알았다고 하여 사용자를 바로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유저명과 호스트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여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여 개인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고소인이 당사자 '실질적'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더라도 IP 주소 등 수집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과 같은 저작권법 위반 범행을 적발하기 어렵고,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사생활의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 형량하였을 때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킹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범죄사실이 증명됨에도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하드웨어 등을 교체하며 범행 흔적을 감추려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2026. 3. 16.자 양형조사보고서에서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공탁사실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소민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29

판사 박민준 _____

판사 이소연 _____